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사회재난구호및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연재난 관련 규정과 지원 기준이 상이한 부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현실성 있는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피해자 정보 입력항목 추가(별지 제1호서식)

간접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알뜰통신사 가입 피해자의 정확한 정
보 확인이 어려워, 피해자 정보 기재 시 기존 3사 통신사 외 알뜰통신
사 회선 항목을 추가

나. 피해자 주생계수단 확인 절차 명시(별지 제1호서식)

피해신고서 유의사항과 처리절차에 주생계수단 확인을 통해 생계비가
지급되는 행정 절차를 기재

다. 재난지원금 반환 시 징수근거 수정(별지 제1호서식)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반환절
차 수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부모 []형제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소유자(미거주), []세입자, []공공임대 세입자			
연락처	이동전화	통신사명	[]KT []SKT []LGU+ []기타 []KT알뜰폰 []SKT알뜰폰 []LGU+알뜰폰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세대원 중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도시가스 사용 여부		[]사용안함, []사용 (가입자명: , 생년월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사망·실종, []부상 (부상정도:			

4. 간접 지원

※ 간접지원 항목별 지원 여부는 간접지원 실시기관별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자동차 소유 여부	[]예, []아니오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공공주택 임대 신청 희망 여부	[]예, []아니오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위기가족 긴급지원 희망 여부	[]예, []아니오	※ 가족돌봄
심리지원 희망여부	[]예, []아니오	※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예, []아니오	
과태료 징수 유예 희망 여부	[]예, []아니오	※ 현재 부과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신고, []신고 안함	내용: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신고, []신고 안함	내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시장·군수·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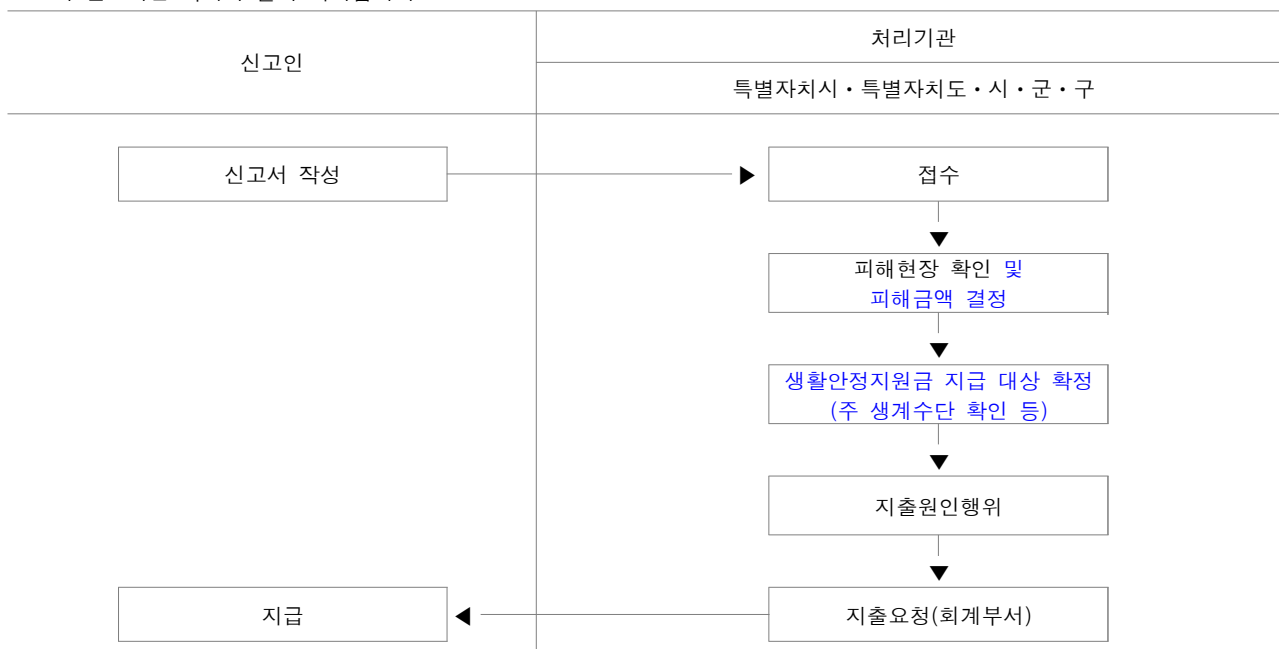
1. 생활안정지원금은 위의 신고 내용을 기초로 담당 공무원이 주(主) 생계수단 등을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2.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작성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
5.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5319